지식경제부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4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신기술지원과 이봉락 과장(02-509-7286), 박성유 연구관(010-2256-6518)		

NEP인증, 중소기업 개발신제품 판로개척에 한 몫
- 2011년도 공공기관별 NEP제품 구매실적 조사결과 -

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 2011년도 공공기관*의 인증신제품(NEP) 의무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, **NEP제도*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한 몫**을 하고 있다고 밝힘

* 중앙정부 39, 지방자치단체 16, 시도교육청 16, 정부산하기관 131 등 총 202개 기관 대상
* NEP(New Excellent Product)제도: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하여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

○ 공공구매 대상 214개 NEP 인증제품을 공공기관에서 **총 2,726억원을 구매**하여 **인증신제품 한 품목당 평균 12.7억원의 매출**이 발생되었고, 해외시장으로 **약 2,366억원을 수출**하여 NEP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및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

* 유효인증 품목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NEP해당품목 구매총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나, 개별 품목당 매출은 증가 추세
* 구매가능 유효인증 품목수(개) : ('09) 343 → ('10) 266 → ('11) 214
* 품목당 평균구매액(억원) : ('09) 10.0 → ('10) 11.9 → ('11) 12.7

□ 이번 조사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는 **정부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자치단체가 저조**한 것으로 나타나,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홍보 확대와 다양한 신기술제품 발굴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확인함

* (실적) 중앙부처 207억, 지자체 888억, **교육자치단체 77억, 정부산하기관 1,554억**
* NEP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**한국전력(1위), 한국수력원자력(2위)**였으며, **경기도청(3위)**을 포함한 지자체 3개기관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됨

○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는 **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%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**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**법정 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도 62개에 달해** 구매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**공공구매 책임자제도** 도입 시행('12.7.27, 시행예정)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

* 향후 국무총리실, 감사원,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, 교육과학기술부에 조사결과 통보

< 공공구매 책임자 제도 개요 >

·지경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를 공공구매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
·공공구매 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지경부장관에게 제출
·지경부장관은 법정 의무구매비율 20% 미달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조사할 수 있고, 권고 받은 공공기관은 권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

* 근거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(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)

□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**NEP 인증제도 및 공공구매제도를 개선 발전**시켜 나갈 계획이며, NEP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**강소기업의 인증참여를 유도하고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 구매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화를 적극 지원**할 방침임

참고자료 : 1. 2011년도 공공기관의 연도별 구매실적 현황
2. 신제품인증제도 개요
3. "공공구매 책임자 제도" 법적 근거

[참고 1]

'11년 인증신제품(NEP) 구매실적 조사결과

1. 구매실적 현황

(단위 : 기관, 억원, %)

구 분		'09	'10	'11
대상기관수		196	200	202
실적 제출	제출기관수	187	199	202
	비율	95.4	99.5	**100.0**
구매 금액	구매 총액	6,047	5,615	**5,607**
	NEP 실구매액	3,434	3,013	**2,726**
	구매비율	56.8	53.7	48.6
기관별 이행율	이행기관수	93	84	84
	비율	47.4	55.3	**57.5**
품목별 이행율	대상품목수	1,805	1,362	1,063
	이행품목수	1,325	1,220	978
	비율	73.4	89.6	**92.0**

* 구매가능 유효인증 품목수 : ('09) 343개 → ('10) 266개 → ('11) 214개

< 기관별 구매금액 >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	중앙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	교육자치단체	정부산하기관	계
'09	구매총액	332	2,128	452	3,135	6,047
	NEP구매액	195	1,121	299	1,819	**3,434**
	구매비중	58.7	52.7	66.2	58.0	56.8
'10	총 구매액	591	2,201	329	2,494	5,615
	NEP구매액	276	1,324	130	1,283	**3,013**
	구매비중	46.7	60.2	39.5	51.4	53.7
'11	총 구매액	345	1,719	169	3,374	5,607
	NEP구매액	207	888	77	1,554	**2,726**
	구매비중	60.0	51.7	45.6	46.1	48.6

☞ '11년 공공기관의 NEP품목 구매 총액은 5,607억원이며, 이 중 NEP제품 구매액은 2,726억원으로 **인증신제품 구매율은 48.6%**

☞ '11년 공공기관별 NEP제품 구매금액(2,726억원)은 전년(3,013억원)대비 9.5% 하락

< 기관별 이행현황 >

(단위 : 기관)

구 분			중앙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	교육자치단체	정부산하기관	계
기관별	'09	대 상	39	16	16	125	196
		이 행	11	1	1	80	93
		비 율	**28.2**	**6.25**	**6.25**	**64.8**	**47.4**
	'10	대 상	37	16	16	83	152
		이 행	7	6	5	66	84
		비 율	**17.9**	**37.5**	**31.3**	**51.2**	**55.3**
	'11	대 상	39	16	16	75	146
		이 행	11	6	4	63	84
		비 율	**28.2**	**37.5**	**25.0**	**84.0**	**57.5**

☞ '11년 의무구매(20%)를 준수한 기관은 84개 기관으로 **의무구매 이행율은 57.5%**인 것으로 조사됨

< 품목별 이행현황 >

(단위 : 품목수)

구 분		중앙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	교육자치단체	정부산하기관	계
'09	대 상	216	749	295	545	1,805
	이 행	123	466	224	512	1,325
	비 율	**56.9**	**62.2**	**75.9**	**93.9**	**73.4**
'10	대 상	145	631	192	394	1,362
	이 행	99	597	135	376	1,220
	비 율	**68.37**	**94.6**	**70.3**	**95.4**	**89.6**
'11	대 상	102	442	126	392	1,063
	이 행	88	409	105	376	978
	비 율	**86.3**	**92.5**	**83.3**	**95.9**	**92.0**

* 품목은 기관별로 구매 품목을 중복 합산

☞ '11년 공공기관이 구매한 NEP제품은 1,063개 품목이며, 이중 의무구매(20%) 달성품목은 978개 품목으로 **의무구매 이행율은 92.0% 임**

2. 기관별 구매형태('11년)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중앙정부부처	지방자치단체	교육자치단체	정부산하기관	합 계
조달구매	7,740	59,077	6,427	8,643	81,887
비 율	37.4	66.5	83.2	5.6	30.0
자체구매	12,961	29,703	1,300	146,793	190,757
비 율	62.6	33.5	16.8	94.4	70.0
합 계	20,701	88,780	7,727	155,436	272,644

☞ 공공기관별 구매형태로는 조달구매 819억원(30.0%), 자체구매 1,908억원(70.0%)으로 **자체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음**

3. 공공구매 상위 10개 기관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순위	기 관 명	구매실적	인 증 품 목	비고
1	한국전력공사	35,340	알루미늄 평각선 주상변압기(10~100kVA) 등 8품목	
2	한국수력원자력(주)	22,758	고속응답의 지능형 전송기(응답속도 : 120ms, 정확도 : ± 0.075%) 등 44품목	
3	경기도청	16,980	에폭시분체 고분자소재를 용융 코팅한 덕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 등 54품목	
4	한국토지주택공사	13,337	상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등 12품목	신규진입
5	한국서부발전(주)	11,289	에탄올 분사에 의한 복합화력 NO2 가시매연 저감장치(70%이상) 등 25품목	
6	한국수자원공사	10,378	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등 13품목	신규진입
7	국방부	9,792	분체도료를 이용한 고효율반사기구(형광등기구 250W 이하) 등 11품목	
8	한국남부발전(주)	9,110	발전소 터빈밸브 구동용 유압 엑츄에이터(호칭지름:127mm~254mm) 등 30품목	신규진입
9	충청남도청	8,569	중공부내 W형 차수벽구조 하수관(PE,PP관)(직경1200mm이하) 등 37품목	신규진입
10	경상남도청	8,140	셀적층주조법을 이용한 부양식 2중 안전잠금 맨홀 뚜껑 및 틀 등 35품목	
	합 계	145,693		

☞ '11년 **상위 10개기관의 NEP구매액은 1,457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53.4%**를 차지함

☞ **'11년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,**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남부발전(주) 3개 기관이 신규로 10위권내 진입

[참고 2]

신제품(NEP) 인증제도

1. 인증제도 개요

▣ 목적

○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,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

▣ 근거법령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,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5 등

▣ 추진경위

○ '93.05.21 :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(NT)인증 제도 도입

○ '95.05.10 : 제15회 「신경제」추진회의에서 「자본재 산업 육성대책」을 확정, 기계류·부품·소재에 대한 품질인증(EM)제도 운영

○ '06.01.01 : 7개 인증제도 ⇒ NEP(산자부, 정통부), NET(과기부 등)

○ '08.02.28 : 정통부 IT분야 NEP인증을 지경부(기표원)로 이관, 통합수행

▣ 인증대상

○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"신제품"

▣ **인증주체** : 지식경제부장관(기술표준원장 업무위임)

▣ **인증유효기간** : 3년(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▣ **인증절차**(소요일수 90일)

신청서접수	⇒	인증평가 위원회 (서류면접, 현장심사)	⇒	인증심의위원회 (전문가 20인 구성)	⇒	인증서 교부
기표원		기표원		기표원		기표원

▣ **추진효과**

○ NEP 인증을 통해 국내 산업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

○ 인증제품 판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

▣ **연도별 인증현황**

구분	'09년		'10년		'11년		총 계	
	신청	인증	신청	인증	신청	인증	신청	인증
건수	327	98	237	64	185	59	749	221

▣ **인증수수료** : 없음

2. NEP인증제품 공공구매 실적

▣ **NEP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**(2011년말 기준)

(단위 : 기관)

중앙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	교육자치단체	정부산하기관	계
39	16	16	131	202

[참고 3]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
[시행 2012.7.27] [법률 제11233호, 2012.1.26, 일부개정]

제17조의2(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,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⑦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,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,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.26]